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33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최형두・박충권・서천호

서일준 · 김미애 · 서범수

김종양 · 김성원 · 김태호

최수진 • 박정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지능정보기술이 기존의 질서 내에서 단순히 인간을 돕고 보완하던 지능정보사회의 초기 단계를 지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의 질서를 형성하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를 맞이함.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구체화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23.9.)」 발표 및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24.5.) 수립 등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사회 심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함.

그러나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 초기 단계에서 의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능정보사회 심화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 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의 목적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정의롭고 공 정하게 향유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법의 지향점을 확장함(안 제1조).
- 나. 제6장제1절의 제목을 "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에서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으로 개정하여 해당 절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6장제1절).
- 다.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기준 수립의 근 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 라.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의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

법률 제 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보하며"를 "확보하며 그 혜택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등"으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을 "지 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으로 한다.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의2(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의 기준 수립 등)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이하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이라 한다)하는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44조의3(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협의회)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과정에서의 원활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협의회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 ③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의4(공론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 전문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심의, 토론 등 공론화를 거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론화의 범위와 방법,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의5(연구 및 민간 활동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 내외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 응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의 촉진 및 제2항에 따른 자문회의의 구성·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을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44조의4에 따른 공론화 지원
- 5. 제44조의5에 따른 연구 및 민간 활동의 촉진 지원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아 혀 행 개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제1조(목적) ----관련 정책의 수립 · 추진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 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 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 ----- 확보하며 그 혜택을 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의롭고 공 하다. 정하게 향유하는 등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및 제1절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사회변화 대응 제44조의2(지능정보사회 심화 대 <신 설> 응의 기준 수립 등)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이하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이라 한다)하는 국가의 책무와 국민 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 준을 수립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3(지능정보사회 심화 대 응 협의회) ① 정부는 지능정보

<신 설>

사회 심화 대응 과정에서의 원 활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지능 정보사회 심화 대응 협의회(이 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 ② 협의회 의장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된다.
- ③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4조의4(공론화) ① 정부는 지 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 전문가, 기업 등 다 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 고 충분한 의견수렴, 심의, 토론 등 공론화를 거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효율적으로 참여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론화의 범위 와 방법, 제2항에 따른 정보시

<신 설>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

스템의 구축・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4조의5(연구 및 민간 활동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 하기 위하여 연구의 저변을 확 대하고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민 간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능정보 사회 심화 대응 자문회의를 구 성 · 운영하고, 행정적 ·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의 촉진 및 제2항에 따른 자문회의의 구 성・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2)	_
<u>업무를</u>	_
	_

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u><신 설></u>

4. (생략)

<u><신 설></u>

③ (생 략)

-----.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44조의4에 따른 공론화 지

 원
- 5. 제44조의5에 따른 연구 및 민 간 활동의 촉진 지원
- 6. (현행 제4호와 같음)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현행과 같음)